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화 : 2094-0470~5



제1640호 2010. 5. 7

조 례

제89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893호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89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규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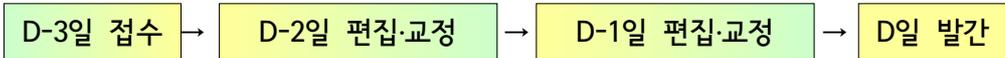
제605호 서울특별시중랑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39
제60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5

인사발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50
기술직 8급 공무원 휴직(육아)	50
행정직 공무원 인사교류(전출)	51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 및 신규임용	51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5월 0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조직의 활성화와 잠재역량 확충을 위하여 일반직 직급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양양 및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 정원조정 내용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개정전비율	1%이내	7%이내	21%이내	32%이내	32%이내	7%이상
개정후비율	1%이내	7%이내	22%이내	31%이내	32%이내	7%이상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9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 이내	12% 이내	50% 이내	30% 이내	4%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8% 이내	23% 이내	54% 이내	8% 이내	7% 이상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u>21%</u> 이내	<u>32%</u> 이내	32% 이내	7% 이상	비율	1% 이내	7% 이내	<u>22%</u> 이내	<u>31%</u> 이내	32% 이내	7% 이상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5월 0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상위법의 법 조항과 일부 불일치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며, 띄어쓰기 등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여성정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계약·지출업무 담당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여성복지담당주사”와 “여성업무담당주사”를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여 조직·직제 개편 등의 사유 발생에 대한 유연성 확보(안 제24조, 제35조, 제40조)
- 나. “모부자가정” 및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현행화(안 제5조, 제15조)
- 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6항)
- 라.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안 제16조의2)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로 한다.

제1장과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과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여성정책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 가. 남녀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정책
 - 가. 양성평등 의식 제고
 - 나.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사회활동 확대
 -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라.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가출 여성, 장애인 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 마. 맞벌이 부부·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 바. 여성 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 사.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
 - 아.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제4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성정보 제공) 구청장은 여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한다.

제9조(여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주간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 채용공고 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성차별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경제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와 같은 조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가정·미혼모·가출 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모성 보호의 강화 및 일과 가정의 양립) ① 구청장 또는 관내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 및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5. 그 밖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위한 지원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장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여성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
3.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다음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과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한다.

제3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의회 의원 1명
2. 예산업무 담당과장, 계약·지출업무 담당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여성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본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u>기타</u>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u>규정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u>기타</u>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p> <p>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및 <u>기타</u>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u>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u>관계 법령이</u>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여성 정책</p> <p>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 「<u>여성발전기본법</u>」 ————— ————— <u>그밖에</u> ————— ————— <u>따른</u> ————— ————— <u>규정하는 것을</u> —————</p> <p>제2조(구의 책무) ————— ————— <u>그밖에</u> —————</p> <p>제3조(구민의 책무) ————— <u>그 밖에</u> ————— -----</p> <p>제4조(적극적 우대조치) <u>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장</u> ————— ————— <u>관계법령이</u>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여성정책</p> <p>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 — <u>제7조에 따른</u> ————— ————— <u>제8조에 따라</u> ————— -----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u>주요 정책</u></p> <p>가. <u>남녀평등의 촉진</u></p> <p>나. <u>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u></p> <p>다. <u>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u></p> <p>라. <u>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u></p> <p>마. <u>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u></p> <p>바. <u>여성 단체·법인에 대한 지원</u></p> <p>사. <u>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4. <u>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u></p> <p>5. <u>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u></p> <p>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6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생략)</p> <p>제7조(여성정보 제공) <u>구청장은 여성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u></p> <p>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여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u>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한다.</u></p>	<p>3. <u>주요정책</u></p> <p>가. <u>양성평등 의식 제고</u></p> <p>나. <u>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사회활동 확대</u></p> <p>다. _____</p> <p>라. <u>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가출 여성, 장애인 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u></p> <p>마. _____ <u>한부모가정</u> _____ -----</p> <p>바. _____</p> <p>사. <u>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u></p> <p>아. <u>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u></p> <p>4. <u>제4조에 따른</u> _____ -----</p> <p>5. _____ -----</p> <p>② _____ _____ _____ _____ -----</p> <p>제6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현행과 같음)</p> <p>제7조(여성정보 제공) ----- <u>여성과 관련한</u> _____ -----</p> <p>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 _____ -----</p> <p>② _____ _____ <u>해당</u> _____ _____ -----</p>

현행	개정안
<p>제9조(여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주간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3.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p>제9조(여성주간 행사) —————</p> <p>— 같은 법 ————— 제26조 에 따른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 각 호의</p> <p>1. -----</p> <p>2. -----</p> <p>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p> <p>4. 그 밖에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p>
<p>제10조(구정참여 확대) ①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②가정복지과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p>	<p>제10조(구정참여 확대) ① —————</p> <p>-----</p> <p>-----</p> <p>-----</p> <p>-----</p> <p>②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 —————</p> <p>-----</p> <p>-----</p> <p>-----</p> <p>③ —————</p> <p>-----</p> <p>-----</p>
<p>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구청장은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u>균등히</u>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험 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u>양성 평등채용목표제의</u>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②구청장은 공무원 채용공고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여성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p> <p>----- <u>균등히</u> -----</p> <p>-----</p> <p>-----</p> <p>----- <u>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u> -----</p> <p>-----</p> <p>② ----- <u>채용공고시</u> -----</p> <p>-----</p> <p>③ -----</p> <p>-----</p>

현행	개정안
<p>④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2조(남녀평등의식 제고) (생략)</p> <p>제13조(성차별 개선 등) ①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4조(경제활동 지원) ①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p>	<p>④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p> <p><삭제></p> <p>제12조(남녀평등의식 제고) (현행과 같음)</p> <p>제13조(성차별 개선 등) ①_____</p> <p>_____</p> <p>_____</p> <p>②_____ 직장내</p> <p>_____</p> <p>-----</p> <p>③_____</p> <p>_____ 연1회 _____</p> <p>_____</p> <p>④_____ 발생시</p> <p>_____</p> <p>-----</p> <p>제14조(경제활동 지원) ①_____</p> <p>_____ 마</p> <p>련하여야 -----</p> <p>②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_____</p> <p>-----</p> <p>③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_____</p> <p>_____</p> <p>-----</p>

현행	개정안
<p>④구청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⑤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한다.</p>	<p><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⑥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5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각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1. 저소득모부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2. (생략)</p>	<p>제15조(복지증진) _____ _____ 위하여 각 호의 _____</p> <p>1. 저소득 한부모가정 _____ 기출 여성 _____ _____ _____</p> <p>2. (현행과 같음)</p>
<p>제16조(아동보육) (생략)</p>	<p>제16조(아동보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6조의 2(모성 보호의 강화 및 일과 가정의 양립)</p> <p>① 구청장 또는 관내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소속직원 및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5. 그 밖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위한 지원

현행	개정안
<p>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제1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할 수 있다.</p>
<p>제18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u>중랑구</u>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u>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금</u>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단체의 지원) ----- -----구-----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p>
<p>제1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생략)</p>	<p>제1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현행과 같음)</p>
<p>제20조(국제협력 지원) (생략)</p>	<p>제20조(국제협력 지원)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p>	<p>제21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 ----- ----- ②-----</p>
<p>제22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u>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u>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p>	<p>제22조(유공자 표창) ----- -----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조례」에 따라 -----</p>
<p>제3장 여성위원회</p>	<p>제3장 여성위원회</p>
<p>제2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u>기타</u>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p>	<p>제23조(설치 및 기능) ----- -----응하기----- -- <u>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p>

현행	개정안
<p>제2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u>중랑구의회 의원 1명</u></p> <p>2. <u>주민생활지원국장</u></p> <p>3. <u>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가정복지과장이 된다.</u></p>	<p>제24조(구성) ① <u>1명과</u> <u>1명</u> <u>9명</u></p> <p>②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p>1. <u>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u></p> <p>2. <u>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u></p> <p>3 <u>여성정책업무 담당</u> <u>과장</u>.</p>
<p>제25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제25조(위원의 임기) <u>연임할 수 있고</u> <u>남은 임기로</u> <u>해당</u></p>
<p>제26조(위원의 해촉) <u>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 <신 설> <신 설></p>	<p>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p> <p>1. <u>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u></p> <p>2.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u></p> <p>3. <u>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p>

현행	개정안
<p>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총괄하고</u></p>
<p>제2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u>구분 운영하고 연 1회 이상</u></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u>긴급한 경우나 그렇지 않다.</u></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회의를 시작하고</u></p> <p><u><삭제></u></p>
<p>제29조(의견청취 등) (생략)</p> <p><u><신설></u></p>	<p>제29조(의견청취 등) (현행과 같음)</p> <p>제29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0조(분과위원회) (생략)</p> <p>제31조(운영세칙)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여성발전기금</p> <p>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남녀평 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 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설치·운영 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p>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 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p>제34조(기금의 관리·이용) ①기금은 구청장 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이용한 다.</p> <p>②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적립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잉여금 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한다.</p>	<p>제30조(분과위원회) (현행과 같음)</p> <p>제31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여성발전기금</p> <p>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_____ _____ 기금을 _____ -----</p> <p>② _____ 각 호의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_____ 3. 그 밖에 ----- <p>제33조(기금의 용도) ----- 각 호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_____ 2. 제18조에 따른 _____ ----- 3. _____ 4. 그 밖에 _____ <p>제34조(기금의 관리·이용) ① _____ -----</p> <p>② _____</p> <p>③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_____ _____ 이루어져야 하며 _____</p>

현행	개정안
<p>제3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p> <p>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1. 중랑구의회 의원 1명</p> <p>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p> <p>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여성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된다.</p>	<p>제3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 의위원회-----</p> <p>②----- 9명 ----- -----</p> <p>③----- 부구청장이 되고 ----- 여 성정책업무 담당국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p> <p>1. 의회 -----</p> <p>2. 예산업무 담당과장, 계약지출업무 담당 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p> <p>3 ----- ----- 압는 ----- ----- 남은 임기로 -----</p> <p>④----- ----- 간사 1명을 -----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제36조(심의회 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6조(심의회 의 기능) ----- 각 호 의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밖에 -----</p>
<p>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 -----</p> <p>②----- ----- -----</p>

현행	개정안
<p>제3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38조(회의) ① _____ 정기회의와 _____ 임시회의로 _____</p> <p>② 장기는 _____ 연 2회 _____ 임시회는 _____</p> <p>③ _____ 회의를 _____ 시작하고 _____</p>
<p>제39조(수당) (생략)</p>	<p>제39조(수당) (현행과 같음)</p>
<p>제40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p> <p>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담당주사로 한다.</p> <p>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40조(기금의 회계관) ① _____</p> <p>② _____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 _____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_____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로 _____</p> <p>③ 「지방재정법」 중 _____</p>
<p>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중랑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 _____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_____</p> <p>② _____ 제1항에 따른 _____ 매 회계연도 _____ 의회에 _____</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보칙</u></p> <p>제42조(사무의 위탁) (생략)</p> <p>제43조(시행규칙)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보칙</u></p> <p>제42조(사무의 위탁) (현행과 같음)</p> <p>제4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5월 0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급신청 기한을 명시하여 구민들의 혼선을 막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중랑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 나.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함(안 제4조제2항)
- 다. 신청기한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안 제5조제3항)
- 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신설함.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셋째 이상(또는 세쌍둥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출생일로부터 만 5세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또는 보육시설 보육료 50%를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 동안 대상아동이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 주민등록 등재사실 기준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여야 하며,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②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1.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
2.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③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1항의 중랑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타기관 출생신고 통보 포함)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갑)의 출산축하금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을)의 셋째이상 자녀(양육수당, 보육료)신청서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갑), 별지 제1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산축하금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 관계		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전화번호	주택		이동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p>「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중랑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거주 기간확인	부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모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신생아 인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출산축하금(양육비) 지급대상

연번	신청 일자	대상자			신청자							지원일자 (입금일자)	지원 금액	신청 부서	환수사유 및 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출생순 호	주 소	관계	전화 번호	예금주 이름	은행 계좌번호	비 고 (전입일)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

접수번호	제 호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 관계		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전화번호	주택			이동전화	
분리당사자	신생아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분리주소				
신생아주소					
분리사유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부 또는 모의 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p>「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분리된 사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p> <p>중랑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사본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급기준) ① (생략)</p> <p>②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는 출생일로부터 만 5세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또는 <u>어린이집 보육료 50%</u>를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u>기간 동안 신청자의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매월15일 주민등록 등재사실 기준</u>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p> <p>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u>중량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u>,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한다.</p> <p>②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1항의 중량구 실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5조(지급신청 등) ①(생략)</p> <p>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타기관 출생신고 통보 포함)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u>지원금 지급신청서</u>(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p>	<p>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셋째 이상(또는 세쌍둥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 ----- <u>보육시설</u> ----- ----- <u>지원기간 동안</u> ----- <u>대상아동</u> ----- -----</p> <p>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 <u>서울특별시 중량구(이하 “중량구”라 한다)</u> ----- ----- <u>부 또는 모</u> ----- <u>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여야 하며</u>, ----- ----- <u>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u> ----- <u>자로 한다.</u></p> <p>②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p> <p>1.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 2.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p> <p>③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1항의 중량구 실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p> <p>제5조(지급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별지 제1호서식(갑)의 출산</u> ----- <u>축하금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을)의 셋째이상 자녀</u> ----- <u>(양육수당, 보육료)신청서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u>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7조(환수조치) ① (생략)</p> <p>②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p> <p>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지원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중량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p> <p>제7조(환수조치)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_____</p> <p>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 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장을 _____.</p>

규 칙

서울특별시중랑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5월 0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 및 확대(안 제3조제1항)
- 나. 재심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제4조제2호나목)
- 다. 시 심사의뢰 사업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 및 확대(안 제5조)
- 라. 심사의 요청시기 조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마.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연임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
- 바. 심의와 관련된 위원 회피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서울특별시중랑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구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의한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2.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서 전액 자체재원(단, 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다만, 구 본청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 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구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심사 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5조(시 심사의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시비보조사업
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특별교부금 지원요구사업
3. 2개 이상의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5.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구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

제6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절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서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 요청) ① 사업주관 부서장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심사 : 3월 10일까지
2. 하반기 심사 : 8월 20일까지
3. 수시 심사 : 투자심사 30일 전까지

② 시장에게 심사의뢰를 해야 하는 사업의 주관부서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의 해당 각 실·국·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심사 : 2월 말일까지
2. 하반기 심사 : 8월 10일까지
3. 수시 심사 : 투자심사 40일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자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자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자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자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사업주관 부서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구 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

1. 각 국장
2.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시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5월 0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2010.2.5.)됨에 따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의 제명 개정 및 서식 정비 (안 제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개정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원대상자명단(별표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당월”을 “그달”로 하고, “마감일전에”를 “마감일 전에”로 한다.

제5조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대장(별표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u>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보험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u>지원대상자명단(별표제1호서식)</u>을 첨부하여 <u>구청장</u>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조 (생략)</p> <p>제4조 (보험료 지급방법) 구청장은 <u>당월</u>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한다.</p> <p>제5조 (대상자관리) 구청장은 <u>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대장(별표제2호서식)</u>을 대장 또는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u>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 ……………</p> <p>제2조 (보험료신청) …………… …………… …………… 별지 제1호서식을 …………… <u>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p> <p>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4조 (보험료 지급방법) …………… <u>그달</u> …………… …………… <u>마감일 전에</u> …………… ……………</p> <p>제5조 (대상자관리) …………… <u>별지 제2호서식</u>을 …………… ……………</p>

인사발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2010. 4. 30.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1	홍상기	지방기술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장	지방녹지 사무관

기술직 8급 공무원 휴직(육아)

2010. 5. 1.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이현명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0.05.01.~2011.04.30.)	도시환경국 주택과	지방시설서기 (건축)

행정직 공무원 인사교류(전출)

2010. 5. 1.

증량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권용예	동대문구 전출을 명함	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 및 신규임용

2010. 5. 3.

증량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은숙	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 명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2	정홍순	복직을 명함 재정경제국 지적과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국 지적과	지방행정 주사보
3	김민경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신규)	
4	배영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면목제2동 근무를 명함	(신규)	
5	김승찬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중화제2동 근무를 명함	(신규)	
6	원경희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근무를 명함	(신규)	